

고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20
------	-----

제출년월일 : 1997. 5. 9

제 출 자 : 고성군수

1. 개정이유

1991. 6. 19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 제13390호)의 제정시행과 함께 종전의 관인규정이 폐지되었기에 고성군공인조례중 상위규정과 상충된 조항을 개정코자함.

2. 주요골자

군본청의 공인의 글씨와 규격을 종전의 관인규정을 준용하던 것을 사무관리규정을 준용하도록함.(안 제4조 1항)

3. 참고사항 .

○ 사무관리규정 (1991.6.19. 대통령령 제13390호)

4. 본 문

고성군조례 제 호

고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관인규정(대통령령 제4722호)"를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 제13390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공인의글씨및규격)①군본청의 공인 (외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제외한다)의 글씨와 규격은 <u>관인규정 (대통령령 제4722호)</u>을 준용한다.</p> <p>②(생략)</p>	<p>제4조(공인의글씨및규격)①----- ----- ----- <u>사무관리규정 (대통령령 제13390호)</u>을 준용한다.</p> <p>②(현행과 같음)</p>